

[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기준 - DRAGONFLY OPTIS 사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후1109 판결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출원상표 - DRAGONFLY OPTIS vs 선등록상표 - OPTease

지정상품 -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 (의료영상용 카테터) - 고무 또는 금속제 등의 가는 관에 렌즈 등을 장착하여 인체의 혈관 내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모니터로 전송하여 인체 외부에서 수술이나 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 기구

**쟁점:** 출원상표 'DRAGONFLY OPTIS'와 선등록상표 'OPTease'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분과 'OPTIS' 부분 중 어느 부분을 요부로 보고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 특허법원 판결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고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

## 2. 대법원 판결요지

요부 판단 기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출원상표 중 'OPTIS' 부분은 '눈의, 렌즈'라는 의미를 갖는 'OPTIC'에서 맨 끝의 알파벳 'C'가 'S'로 바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OPTIS' 부분은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성질과 관련된 'OPTIC'을 연상할 것으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분은 '잠자리'라는 의미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OPTIS'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이 강하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OPTIS'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DRAGONFLY'와 선등록상표를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첨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후1109 판결 2016후1109

변리사22년/변호사 14년, 심판소송, 상표/디자인/저작권/부정경쟁분쟁 One-Stop 대응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